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2. 9 선고 2017가합556912 판결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전 문

원고신용보증기금

피고1. 주식회사 A

2. B

변론 종결2018. 1. 12.

판결 선고2018. 2. 9.

주 문

1. 피고 주식회사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7,415,825원 및 그 중 257,193,393원에 대하여 2016. 11. 17.부터 2017. 11. 25.까지는 연 1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피고 회사가 부산은행(이하 '소외 은행'이라 한다)에 부담하게 될 대출금채무에 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각 신용보증약정을 하였고, 소외 은행은 위 각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아래 표 기재 각 대출일자에 피고 회사에 아래 표 기재 각 대출금액을 변제기한을 각 보증기한으로 정하여 대출하였다.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B은 피고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부담하게 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1차 보증	2013. 6. 20.	135,000,000	2017. 6. 16.	일반자금 대출	2013. 6. 20.	150,000,000
2차 보증	2016. 6. 16.	127,500,000	2017. 6. 15.	종합통장 대출	2016. 6. 17.	150,000,000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피고들은 원고에게 보증채무 이행금액과 이에 대한 보증채무 이행일부터 상환일까지의 지연손해금, 보증채무 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든 비용 등을 상환하기로 하였다. 2016. 11. 17. 당시 적용되는 약정 지연손해금률은 연 10%이다.

나. 피고 회사는 2016. 9. 20. 이자연체로 신용보증사고 발생 후 최종 부실처리 되어 위 각 대출금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는바, 원고는 2016. 11. 17. 소외 은행의 보증채무 이행 요구에 따라 소외 은행에 위 각 대출원리금 합계 258,514,401원{(1차 보증 원금 127,500,000원 + 이자 1,554,350원) + (2차 보증 원금 127,500,000원 + 이자 1,960,051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다. 원고는 2016. 11. 17. 피고 회사로부터 대위변제금 중 1,321,008원을 회수하였고, 원고는 피고 회사에 대한 구상금채권 보전을 위해 피고 회사 등의 재산에 대한 채권보전비용으로 합계 1,297,362원을 지출하였다가, 송달료의 환급 등으로 합계금 1,075,291원을 회수하였다.

라.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위 각 대출금채권을 대위변제한 원고에게 구상금 257,193,393원(258,514,401원 - 1,321,008원), 채권보전비용 222,071원(1,297,362원 - 1,075,291원) 및 회수금 1,321,008원에 대한 1일간의 확정손해금 361원($1,321,008 \times 10\% \times 1/365$, 원 미만 버림)의 합계액인 257,415,825원 및 그 중 구상금 잔액 257,193,393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6. 11. 17.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최종 송달일까지는 원고가 정한 이율인 연

1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재판장판사박상구

판사최민석

판사신세희